

강릉시의회 공고 제2022-3호

「강릉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월 18일

강릉시의회의장

강릉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강릉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를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출석 대상자로 구분하여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강릉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를 출석 대상자에 따라 구분(안 제2조제2항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전문위원)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:

- 주소: (25522)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(홍제동) 강릉시의회
- 전화: 033-640-4032
- 팩스: 033-640-4070

붙임 강릉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
부개정조례안 1부.

강릉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강릉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6호 및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의회의장 및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원의 요구나 관계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 다음 각 호의 임원에게 출석 여부를 확인하여 관계공무원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.

1. 「지방자치법」 제163조에 따라 강릉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원
2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른 강릉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임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범위) 강릉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「지방자치법」 제163조에 따라 강릉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원</p> <p>7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항에 따른 강릉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임원</p> <p><신설></p>	<p>제2조(범위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제></p> <p><삭제>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의회의장 및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원의 요구나 관계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 다음 각 호의 임원에게 출석 여부를 확인하여 관계공무원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1. 「지방자치법」 제163조에 따라 강릉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원</p> <p>2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</p>

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
제1항에 따른 강릉시가 출자하
거나 출연한 법인의 임원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

□ 법규명: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제·개정안 내용	의 견	비 고